

성명	의장	최상귀	간사	부의장	
접수일시	2000. 4. 26	446	(공란)	국장	이동호
처리과	제천시의회			담당	김민

2000. 4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위의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- 붙 임
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 2.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부.
 3. 참고서류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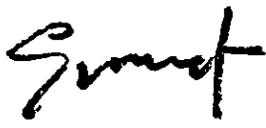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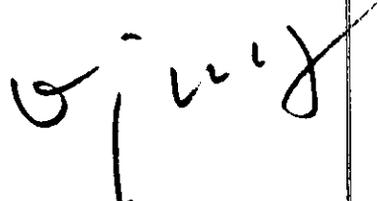
※ 예산조치수반여부 : 부

발의자 : 최상귀 의원(붙임)
외 3인



(찬성자 서명 별첨)

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 의 서 명 서

의 원 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최 상 기		
劉 永 和		
박 연 실		
李 在 煥		

의안번호	제 610호	의 결 사 향
의 결 년 월 일	2000. 4.	

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발 의 자	최상귀의원 외 3인
발의년월일	2000. 4.

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610
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4.

발 의 자 : 최상귀의원 외 3인

1. 제안이유

- 1995. 2. 3. 규칙 제1호로 제정된 ‘제천시의회회의규칙’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한 규정을 삭제함 (안 제8조)
-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함 (안 제9조)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의회규칙)
-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

4. 기타

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제4항을 제3항으로,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
-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원 총선거후 <u>최초 집회일에 선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·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1년6개월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
<p>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의장선거일이 <u>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</u></p> <p><제1항과 제2항 신설></p>	<p>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선거일이 <u>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</u></p> <p>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<u>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</p>